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8. 3. 26. 내규 제04-111호
전부개정 2019. 11. 22. 내규 제04-1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 및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이하 “성장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및 멘토링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시설과 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라 함은 센터 사용 및 성장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며, 상주기업과 코워킹기업으로 구분한다.
4. “상주기업”이라 함은 센터에 입주하여 사무공간을 점유하고, 상시 상담(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장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5. “코워킹기업”이라 함은 센터에 시설과 공간을 공유하여 이용하며, 상시 상

- 1 -

- 담(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장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6. “입주기간”이라 함은 입주기업이 입주협약서에 명시된 협약시작일로부터 “졸업” 및 “퇴거”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졸업”이라 함은 입주협약서에 명시된 협약종료일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8. “퇴거”라 함은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입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입주 기간 종료 이전에 센터를 나가는 것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운영위원회”라 함은 매년 센터별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입주기업 선정, 연장평가, 퇴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기능 및 조직

제4조(기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터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
2. 입주기업 선정, 졸업, 퇴거 등에 관한 업무
3. 공용시설 및 공용설비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
4.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업무
5. 그 밖에 입주기업 성장지원과 지역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에 관련된 업무

제5조(조직의 구성) 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성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며, 각 센터별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센터별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총괄책임자(이하 “운영기관장”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2 -

제3장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

제6조(지원자격) ①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직접 지원 종료 창업팀으로서 입주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조직형태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인 조직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졸업기업 등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2. 휴·폐업 중에 있는 자
 3.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4. '폐성년후견인', '폐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
 5. 기타 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6. "상주기업"으로 2년 이상 센터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자(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재도전팀'으로 졸업한 기업은 제외)

제7조(입주기업 모집) ①원장은 입주기업 모집을 위해 진흥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여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입주기업 선발을 위한 기타 서류를 추

- 3 -

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업 선발 및 취소) ①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을 선발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입주기업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계획의 혁신성
 3. 사업계획의 시장성
 4.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원장은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공고한다.
1. 운영기관장은 센터 운영·관리, 자원연계,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자문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운영위원을 추천하여야 하여 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의 7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위원은 진흥원 사업소관부서 부서장, 사업소관본부의 본부장, 위탁운영기관의 운영기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 ④원장은 입주기업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입주기간은 모집 공고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

②다만, 입주기간 동안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입주기업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입주협약 체결) ①원장은 선발된 입주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서식은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단, 코워킹기업은 입주협약 체결을 생략하고 입주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협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유급근로자 명부 등 입주 승인 시 공고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준수)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중 센터의 운영규정과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경고조치) 운영기관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활동에 피해를 끼쳐 2회 이상의 민원을 받고 운영기관장은 해당 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센터에 사전 신고 없이 입주공간을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
3. 간담회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센터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6. 센터 내 공용시설 및 공용물을 운영기관장은 승인 없이 사용 또는 반출하거나, 제22조 소정의 물품을 센터 내로 반입 또는 10일 이상 적재한 경우
7.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퇴거) ①원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5 -

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내 경고조치가 누적 3회인 경우
 2.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활동에 현격한 피해를 끼쳐 5회 이상의 민원을 받고 원장이 해당 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센터에 사전 신고 없이 입주공간을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
 4.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7. 제12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퇴거를 명하는 경우 운영기관장은 입주기업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일을 명시하여 퇴거일 15일전까지 퇴거명령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입주기업은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퇴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 ④입주기업의 퇴거 이후 남겨진 짐은 센터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자진퇴거) ①입주기업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15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원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 일에 자진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②입주기업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자진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진퇴거의 경우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제15조(선정방법)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 간 경쟁 방식으로 하고, 진흥원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소관부서에서 분임계약으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거나 계약소관부서를 통해 수행용역기관을 선정

- 6 -

할 수 있다.

- 제16조(신청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운영기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관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우선구매대상 등도 참여 가능하다.
③신청참여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모두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④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된 기한 내에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진홍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정기준)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역량,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 태도(책임성, 성실성 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18조(사업비 구성)** ①사업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3명 이상의 인력을 기준으로 산출
2. 경비는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관리비로 구분하고, 각 세부명세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을 기준으로 편성
3.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각 호의 기준으로 구성되며, 이 외의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 제19조(사업비 정산)** ①계약 체결 시 센터별 운영기관장이 제출한 예산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기간 중 운영기관의 사유로 산출명세서를 변경해야 할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목 간 변경
2. 10% 이상 세목 간 변경
3. 당초에 없던 세목을 신설하는 경우
②기타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평가)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월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입주기업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세부평가지표정의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시설 운영 및 공간 관리

- 제21조(운영 대상시설)**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운영 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사무실
2. 입주기업 사무공간
3. 공유 공간(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소셜큐브, 소셜키친, 폰부스 등)
4. 공용 OA장비(복합기 등)

제22조(시설 운영범위) ①센터의 시설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시설물의 운용, 보관, 보전에 관한 지시 및 감독
 2.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운용
 3.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사용 지원관리
 4. 시설의 손실 또는 파손 실태 파악
- ②센터는 9:00~18:00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별 사정에 따라 진홍원과 협

- 8 -

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개방시간 중 운영기관은 1명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주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 경우, 원장에 사전 승인을 얻고 상주기업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시설의 이용 및 관리)** ① 입주기업이 공용시설 및 공용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시설 및 설비 이용시간은 센터의 일반 운영시간과 같다.
③ 입주기업에게 빌려준 장비에 대하여 소모성 물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계산이 어려운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센터의 공용시설 중 일부는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 제2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기업은 센터 공간 내부에 기본적으로 위치한 칸막이, 책상, 의자 및 그 밖에 물품을 타 입주기업의 공간을 침해 할 정도로 이동시켜 공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운영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사무공간 내 추가적인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은 원장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손해배상 등)** 입주기업 방문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장비 등이 손상되었거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기업이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26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입주기업은 퇴거 시 입주 공간을 첫 입주 때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 공간을 원상으로

- 9 -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7조(폐기물 처리 및 청결유지)** ① 작업 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기업의 책임 하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공용시설 및 사무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8조(물품 반출·입)** ① 입주기업은 인화물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센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운영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이 시험설비,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입주기업이 유해물·위험물을 취급·저장 및 보관·설치할 때에는 운영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해물질관리법 및 소방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물품의 폭발·시설물의 파손 등의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입주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제29조(신고의무)** ① 입주기업이 부도나 가압류, 가치분, 강제집행 등 회사의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주기업이 30일 이상 사무공간을 비울 경우 운영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발생 시 그 책임은 입주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제30조(금지사항)** ① 입주기업은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0 -

1.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또는 개시하고 이에 대한 센터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거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여, 센터가 그러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반입,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4. 센터 내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냉난방용 기기를 반입하거나 센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냉난방 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센터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6.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불쾌감을 주는 모든 유홍행위
 7. 기타 원활한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장이 금지하는 행위
- ②운영기관장은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제31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운영기관장은 센터의 보안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센터를 출입하는 모든 입주기업은 반드시 출입보안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출입은 등록된 자로 한정하며, 방문객의 경우 방명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입주기업 관계자의 입·출입을 통해 근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 연장 등의 평가 시 근태 관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원장은 센터의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장은 비상연락방을 제작하여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⑤입주기업은 센터 구역 내에서 재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난상황을 운영 기관장 및 센터 관계자에게 알리고 조기 진압에 노력하여야 한다.

- 11 -

⑥운영기관장은 작업상 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키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3.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한 사항들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11.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전에 수행한 사항은 개정 전 지침을 적용한다.

운영기관 선정 기준표		
구분	심사항목	비고
사업추진 의지 (20점)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사업 목표 및 계획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 역량 (50점)	참여인력	
	지원 프로그램	
	자원연계	
	수행 경험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 (15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역량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이해	
태도 (15점)	프로젝트 책임성	
	성실성 및 과제 성공에 대한 확신성	

※ 심사항목별 세부심사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